

제 1 장 법령의 체제

1. 법령의 제명

가. 법령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제명의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 문제는 종종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시적·특례적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간결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흔히 ‘등’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두개 정도일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3) 법령의 제명은 법령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제명을 구별하여 표현해야 한다.

나. 법령 형식에 따른 제명 구분

1) 법률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법령의 제명은 어떤 경우에 「○○법」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로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법령이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법」으로,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에 관한 법률」로 쓴다.

2) 대통령령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법률) 시행령」, 「○○규정」,⁶⁶⁵⁾ 「○○령」,⁶⁶⁶⁾ 「○○직제」 등으로 한다.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법(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모법 일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 권한 범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규정」, 「○○령」으로 하되, 조직 법규에 속하는 것이면 「○○규정」으로, 작용법규에 속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한다. 다만, 조직 법규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직제이면 통상 「○○직제」로 한다.

3) 총리령·부령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법률) 시행규칙」 또는 「○○규칙」을 붙인다.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법(법률)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발령권자 권한 범위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한다.

다. 법령 내용에 따른 제명 구분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법률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기본법」, 「○○특별법」,⁶⁶⁷⁾ 「○○특례법」 등으로 정해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665)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근로감독관규정」 등

666)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택사용권등록령」, 「자동차등록령」 등

667) 원래 '특별법'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둘 이상의 법률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말로서, 1961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명에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으며,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에서 특별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최근 그 사용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또는 「○○특례법」으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⁶⁶⁸⁾

이와 같이 특별법과 특례법은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명에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법이 많아지면 전체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제명·본칙·부칙과 장·절의 구분

가. 제명·본칙·부칙의 구분

1)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명은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고, 본칙은 법령이 본래 규율하려는 주된 내용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법령의 본체에 해당되며, 부칙은 본칙에 따르는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을 정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규율 내용은 당연히 본칙에 두어야 한다.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 간의 연결이나 조정 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을 정하는 부대적(附帶的)인 사항은 부칙에서 정한다.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칙이 있다. 보칙은 본칙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으로서 대개 그 내용을 정하는 장이나 절의 표제로도 사용된다.

2) 본칙에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칙에는 부칙의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668) 그 밖에 특별법에 속하는 사안 중 가중처벌 등 특별한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특정한 사항이나 경우에 있어 잠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법」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나. 장·절의 구분

- 1) 법령 본칙의 조문 수가 많으면(통상 조문 수가 30개 이상이 되는 경우)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⁶⁶⁹⁾ 총칙·보칙·벌칙은 대개 그 용어를 그대로 장의 명칭으로 사용한다.
- 2) 장의 조문 수가 많으면 장의 조문들을 다시 절·관의 순서로 그 정도에 따라 좀 더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 수가 많으면 ‘장’의 상위 단위 구분으로서 ‘편(編)’을 둘 수 있다.
- 3)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만 하고, 부칙에서는 하지 않는다.
- 4) 규정 내용의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비록 조문 수가 적더라도 독립된 편·장·절·관을 두어 법령 전체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5) 상위법령에서 장·절을 구분하고 있으면 하위법령의 장·절 구분도 원칙적으로 이에 따른다. 조 숫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도 통합해서 장·절을 규정할 수도 있다.

다. 총칙과 통칙의 구분

어떤 법령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부분의 표제는 ‘총칙’으로 하고, 법령이 장·절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장·절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모은 것의 표제는 ‘통칙’으로 한다.

3. 법령 조항과 별표·서식

가. 조·항·호·목

- 1) 법령의 본칙은 조(條)로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폐지 법령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조’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만 표시한다.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과 같이 표시한다.

669) 장은 총칙, 실제 규정, 보칙, 벌칙으로 구분할 수도 있으나, 대개 장의 제목으로 ‘실체 규정’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그 규정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을 사용한다. 편, 장, 절, 관을 두는 경우에는 그 규정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여야 한다.

2)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⁶⁷⁰⁾으로 하고,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며,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⁶⁷¹⁾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항’은 ①·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한다.

3) ‘호’는 어떤 ‘조’나 ‘항’ 중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되, ‘호’로 열거하는 것보다 ‘조’나 ‘항’의 본문 또는 단서(전단 또는 후단) 부분에서 직접 열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호’를 두지 않을 수 있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4)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내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한다. ‘목’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

5)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를 사용하고, 1), 2), 3).....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사용한다. 목 단위 이하 부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개정문을 작성할 때에 목 이하의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개정문을 작성한다.

제○조제○항제○호○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을/를 “△△”로 한다.
 제○조제○항제○호○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670) 3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경우 전단, 후단, 단서 등 각 문장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두 문장 이하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671) 정의 규정에서는 ‘호’로 구분되어 있지만, “~~”란 ~~~을 말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법령 형식>

법률VV제VVVVVVVV호 (법령의 종류와 공포번호: 신명조 14pt)

Enter ↵

○○○법

(법률제명: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pt, 진하게)

Enter ↵

제○○조(○○○○)V①V----- (신명조 14pt)

VV②V-----

VV1.V-----

VVVV가.V-----

VVVVVV1)V-----

VVVVVVVV가)V-----

Enter ↵

부VVVVVV칙

Enter ↵

(부칙: 가운데 정렬, 신명조 14pt, 진하게)

제1조(시행일)V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신명조 14pt)

나. 법령 조문의 제목 표시

법령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법령 내용을 검색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조’ 바로 다음에 연이어 괄호를 만들어 ‘제목’을 표시한다.

한 조문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어나 어절을 이용하여 제목을 정하고,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정하기 곤란하면 “(… 등)”이라고 표시하여 그 제목이 그 밖의 다른 내용까지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법령 조문의 내용 표시

법령 내용은 원칙적으로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한다. 다만, 법령 내용을 서술적인 문장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분량이 너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 규정 내용을 간명하고 알기 쉽게 규정하기 위해 계산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규정할 사항의 종류·성질·분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규정 내용이 기술적·전문적이거나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나 별지 서식 등을 만들어 규정한다.

라. 법령 조항 인용의 표시

1) 해당 법령을 인용할 경우

동일한 법령 중에서 그 법령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법”, “이 영”, “이 규칙” 등의 표시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조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시한다.

2)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

어떤 법령 중에서 다른 법령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제명과 해당 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연이어 인용할 때에는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은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다른 법령의 제명과 조항이 같은 문장에서 다시 나오는 경우 법률은 “같은 법 제○조”, 대통령령은 “같은 영 제○조”, 총리령·부령은 “같은 규칙 제○조”라고 표현한다.

[입법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7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③ (생략)

3)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같은 조항에서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법 제○조”라고 구분하여 표기한다.

4) 부칙 규정에서의 조문 인용

부칙 규정에서 그 법령의 본칙 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조”라고 표기하지 않고 본칙의 조문만을 표시하고, 그 법령 부칙 안의 다른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부칙 제○조” 등과 같이 부칙임을 표시하여 본칙 규정을 인용할 때와 구별한다.

5)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할 경우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에 규율 내용을 위임한 경우 그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조·항·호를 명시한다.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에서 위임할 근거가 되는 내용을 실제적인 근거 조항과 위임 근거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실제 근거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근거 조항과 위임 근거 조항이 서로 다른 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 실제 근거 조항만 인용하는 것이 불명확하면 실제 근거 조항과 위임 근거 조항을 함께 인용한다.

상위법령의 여러 조문을 연이어 인용하는 경우에는 “법(영)” 표시는 문장의 맨 처음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상위법령과 해당 법령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법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영 제○조”와 같이 구분하여 표현한다.

6) 조항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법령 조항에 각 호가 열거되어 있고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내용상 각 호의 일부(예컨대, 제○호부터 제○호까지)를 모두 지칭하거나 그 중 어느 하나의 호만을 지칭하려면 다음과 같은 표현 방식에 따른다. 다른 조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가) 그 인용 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인용 대상의 하나를 지칭하는 경우

“제○호, 제○호 및 제○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호부터 제○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른 호의 내용이 해당 호의 필수 요건이나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무규정 등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의미가 명백한 경우에는 “모두” 또는 “어느 하나”를 생략하고, “다음 각 호의 ○○” 또는 “다음과 같다”로 간결하게 표현한다.⁶⁷²⁾

67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항만법」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한편, 각 호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해 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⁶⁷³⁾로 표현하거나 필수 요건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나 각 호의 본문·단서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⁶⁷⁴⁾ 등을 사용할 수 있다.⁶⁷⁵⁾

마.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1) 별표나 별지 서식의 표기 방법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제목에서는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를 붙여 표시하고, 법령문에서 이를 인용할 때에는 “[]”를 쓰지 않고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인용한다.

2)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가) 규정 내용을 세로로 열거하는 경우

1. ----- 가. ----- 1) ----- 가) ----- (1) ----- (가) -----
--

673) 「전과법」 제58조의2제9항 등

67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 항 제3호 등

675) 나열되는 요건들 중 어느 하나도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규정 내용을 도표로써 가로로 열거하는 경우

별표를 신설하거나 전부개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일부개정 시 해당 부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가급적 호, 목 등을 붙인다.

업종	전문인력
가. -----	1) ----- 2) -----
나. -----	1) ----- 2) -----
다. -----	1) ----- 2) -----

구 분	시설명	시설기준	고용인원
1. -----	1. -----	1. -----	1. -----
가. -----	가. -----	가. -----	가. -----
1) -----	1) -----	1) -----	1) -----
가) -----	가) -----	가) -----	가) -----
(1) -----	(1) -----	(1) -----	(1) -----
(가) -----	(가) -----	(가) -----	(가) -----
2. -----			

3)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 본칙의 관련 조항을 써준다.

<p>[별표 1]</p> <p>○○○ <u>시험과목</u>(제○조 관련)</p>
--

4)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식의 구비서류란에는 본칙의 해당 조항에서 구비서류로 규정된 것만 명시하고, 서식에서 새로운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정하지 않는다.

5)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비고란, 구비서류란의 번호표시는 1., 2., 3., 4. 등으로 한다.

6) 별표 비고란에서 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호”로 표현하여 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